건설119 데스크 주요 활동 가이드라인

2019. 7.

노후인프라센터

본 가이드라인은 건설119 데스크를 통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는 PT팀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필요시에는 협의 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 처할 수 있다.

0. PT팀원의 자세

- 사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진다.
- 언론, 보도 등 재난재해에 관심을 집중한다.

1. 현장 출동자 선정 및 출동 절차

- 경영진, 본부장 및 소장, 건설119 등에 의해 출동이 필요한 경우, 건설119 위원장의 승인 하에 간사가 출동자를 1차적으로 선정한 후 본부장 및 소장에게 출동 지시를 요청한다.
- 요청받은 본부장 및 소장은 본부원 또는 소원과의 조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출동자를 선정하고 출동을 지시한다.
 - *출동팀은 상호간 안전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시받은 출동자는 출장신청 후* 건설119에서 개별 제공한 조끼(기지급)를 착의하고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건설연에서 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인식시킨다.
 - *건설119 계정을 통해 출동할 경우, 복귀 후 출장신청 가능. 단, 긴급 상황에서만 後신청 권장
- 출동시 안전모(기지급), 안전화, 카메라, 필기도구, 보고서 양식(붙임1)*을 준비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출동자가 현장 조건에 맞추어 판단하여 준비한다.
 - *출동자는 [붙임1] 보고서 양식을 숙지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복귀 후 실무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 필요시 건설119에서 보유한 장기임차차량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장기임차차량이 사용 중인 경우 혹은 현지에서 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임차한다.
 - *출동 전 건설119 실무자에게 임차차량 키를 수령하고, 출동자 소속부서에서 주유카드를 수령함
 - *주유비, 통행료 등 지출 관련 품의는 출동자가 출장신청과 함께 직접 함. 단, 긴급 상황에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실무자가 지출품의를 대신할 수 있음
- 위원장 및 간사는 현장 출동이 결정되는 대로 해당 재난재해 유관 기관 담당자를 미리 파악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기관으로의 연락을 통하여 건설119 출동 및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1.1 의사결정권자 중 부재자가 있는 경우

- 건설119 내 최고 결정권자는 위원장이며, 간사, 실무자순이다. 부재 시 차상위권자에게 미리 보고함으로써 업무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장 부재 시 간사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며, 간사 부재 시 위원장이 간사 업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간사 모두 부재시 미리 대행을 지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실무자가 대행한다.
- 본부장 및 소장 부재 시 건설119 위원장이 임의로 본부장 및 소장 대행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은 출동자 선정 및 출동 지시의 권한을 가진다.
- 실무자는 출동자에게 위원장, 간사, 실무자, 담당 본부장 및 소장 명단 및 보고절차를 제공하여 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조사 수준 정의

- 현장조사 수준은 현장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구분하며, 현장조사 범위는 ① 재난재해 자체 조사, ② 재난재해로부터 파급된 피해 상황 조사, 그리고 가 능한 범위 내에서 ③ 추가 피해상황 또는 대책 등에 대한 조사로 한정한다.
- 각 재난재해 유형별 성격 및 피해 유형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집중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 추가적으로 현장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간사와 협의 후 건설119 데스크 계정에서 지원 한다.

2.1 건설연 자체 판단(경영진, 본부/소, 건설119 등)에 의해 출동한 경우

- 재난재해 현장에서 허용하는 위치까지만 접근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사진 촬영 역시 현장에서 허용하는 수준에 한하여 수행한다.
-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절대 현장에 접근하지 않으며, 건설119 간사에 게 상황을 보고한다.
- 만약 현장에 재난재해 현장 대책 수립을 지휘하는 기관 또는 인력이 명확한 경우, 지휘 기관 또는 인력, 진행상황 및 결과 등 전반적인 정보를 건설119 간사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한다.
- 공식적인 현장 지원은 건설119 또는 경영진의 최종 지시 이후 수행하며, 지시 이전에 는 간략한 현장 상황 파악 및 현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조사만 수행한다.

2.2 공식적인 외부 요청에 의해 출동한 경우

- 개인에게 요청이 온 경우와 건설연으로 인력 파견 요청이 온 경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공식적인 요청에 의한 활동으로, 해당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별 대외활동으로 추진하며, 현장조사 수준은 요청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1차적으로 본부장과 상의 후 수행한 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동자는 건설119 간사, 위원장 과 상의하도록 한다.
- 단, 요청 기관의 조사 요구 사항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출동자는 반드시 조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건설119 간사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한다. 간사는 위원장, 경영진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사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출동자에게 통보한다.

3. 언론 대응 요령

3.1 건설연 자체 판단(경영진, 본부/소, 건설119 등)에 의해 출동한 경우

- 현장조사 참여시 현장을 방문한 언론기관에서 건설연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관련 정보에 대한 인터뷰 또는 질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이론적·원론적인 답변이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관련 재 난재해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단,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문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에 혼선을 주는 인터뷰는 지양한다.
- 특히, 재난재해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 예상 피해규모, 향후 대책 등 신중한 답변을 요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즉답하지 않으며, 재난재해 현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조사단을 대표하여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3.2 공식적인 외부 요청에 의해 출동한 경우

- 공식적인 요청에 의한 활동 시 언론이 인터뷰 요청을 할 경우,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이론적·원론적인 답변이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관련 재난재해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만약, 관계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인터뷰의 경우 관계기관으로 문의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에 혼선을 주는 인터뷰는 지양한다.
- 특히, 재난재해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 예상 피해규모, 향후 대책 등 신중한 답변을 요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즉답하지 않으며, 재난재해 현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조사단을 대표하여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4. 현장 지휘 공무원 대응 요령

4.1 건설연 자체 판단(경영진, 본부/소, 건설119 등)에 의해 출동한 경우

- 현장에 재난재해 현장 대책 수립을 지휘하는 기관 또는 인력이 명확히 표시되는 경우, 건설연에서 현장에 방문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건설연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다. 지휘 기관 또는 인력, 진행상황 및 결과 등 전반적인 정보를 건설119 간사에게 즉각적으로 제공한다.
- 현장 지휘 기관 또는 인력이 지원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서는 건설119 간사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한다. 1차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자체 판단하며, 공식적인 재난재해 대책위원회 또는 조직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 만약 조직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부처, 부서, 성명, 연락처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건설119 간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현장 지휘 기관 또는 인력이 건설연 지원 여부 문의에 대해 거절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현장조사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며, 건설119 간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2 공식적인 외부 요청에 의해 출동한 경우

- 공식적으로 현장 지휘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및 인력과의 정보 공유가 수행되는 사항으로써, 관련 담당자의 인적사항(부처, 부서, 성명, 연락처 등)을 건설119 간사에게 제공한다.

5. 현장 주민 대응 요령

- 재난재해 현장 주민에 대해 직접적인 접근 또는 대면은 하지 않는다.
- 피해 현장 주민이 질문하는 경우, 전문가 관점에서 답변이 가능한 이론적·원론적인 범위 내에서 답변하되, 관계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주체로 문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때 피해 현장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항상 정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 재난재해 현장 주민이 과도한 현장 지원 관련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정중하게 사양하며,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의 혼란 없이 공개가능한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 언론 대응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 이론적·원론적인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친절하게 답변하되, 향후 대책 및 대응 방향 등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

6.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 재난재해 현장으로 이동 중 혹은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 보험회사(건설연 단체보 험회사, 임차차량 보험회사)에 개별 연락 후 간사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 *단체보험 **현대해상**: 02)2181-2780~3
 - *임차차량보험 **AJ렌터카 자체보험** 사고/수리/긴급출동요청: 1544-1600(평일 09시~19시), 1661-7977(야간, 주말, 공휴일)

7. 복귀 후 보고 절차

- 재난재해 현장에서 복귀하면서 건설119 간사에게 전반적인 사항 및 결과에 대해 간략 히 보고한다. 간사는 해당 내용을 위원장 및 관련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출동자는 복귀 후 (붙임1) 재난재해 발생현장 조사 및 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 촬영 사진 원본파일과 함께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한다. 실무자는 출동자의 보고서 및 사진을 취합하여 간사에게 보고하며, PT 가점에 활용한다.
 - *건설119 데스크 플랫폼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플랫폼 구축 시 매뉴얼 작성 후 전체 공지 예정

붙임 1

재난·재해 발생현장 조사 및 분석결과보고서

작성자		재해·재난 분과		/폭발, 지진, 싱크홀, 교통사고, 홍수/가뭄, 환경오염 가능, 단, 분과명 변경X)	
관련부처		정부·지자체 /	' 타 기관 / KI		
조사일시	2019/00/00~ 2019/00/00	조사위치	행정구역 상세위치	군/구 수준까지 기제	
조사시설물	교량, 옹벽, 비탈면, 터널, 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건축물, 지반, 지하시설물, 기타(수기입력) (중복 가능, 단, 시설물명 변경X)				
조사목적	의뢰자가 요청한 사항 기재				
KICT 조사담당자	이름1/부서명1 이름2/부서명2 				
공동 참여기관	KICT 외 참여기관/참여자 정보 기제				
관련문서	공문 있을 경우 기제				
현장개요	현장에 관한 상세 정보 기제(추정 원인, 추정 피해 규모 등 포함)				
조사·분석 결과	1. 결과 1: 개조식 입력 2. 결과 2 3. 결과 3 4				
검토의견 (대응방안)	1. 의견 1 2. 의견 2 3. 의견 3 4				
관련사진	 ※ 현장, 피해 사진 등, 분량 제한 없음 ※ 사진은 반드시 첨부하며, 보고서 제출시 사진 원본 파일 함께 제출 (파일명: 재난재해유형_조사위치(행정구역)_일시_출장자명_사진이름_순번.jpg 예: 지진_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_190801_홍길동_현장전경_1.jpg → 사진 업로드시 해당 파일명으로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예정) 				

붙임 2

건설119 데스크 PT 명단 및 연락처(2019)

◎ 위원장: 정문경 연구부원장(031-910-0003, 010-7745-8593)

◎ 간 사: 박기태 노후인프라센터장(031-910-0134, 010-6247-7592)

재난·재해 분과		부서명	직급	전문가	내선	휴대폰번호
		ተጣሪ	71	で正刀	기간	#네는인호
			연구위원	최 기 선	031-910-0716	010-6423-7396
			연구위원	박 금 성	031-910-0370	010-4205-4947
		국민생활	연구위원	이 상 섭	031-910-0768	010-3229-1372
	건축물	연구본부	연구위원	허 병 욱	031-910-0368	010-9065-9344
			수석연구원	곽 명 근	031-910-0358	010-5458-2210
			선임연구위원	배 규 웅	031-910-0363	010-3763-6167
		복합재난	수석연구원	박 상 기	031-910-0724	010-8681-2493
		대응연구단	수석연구원	김 형 도	031-910-0048	010-3289-2559
		인프라안전 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031-910-0130	010-9204-9629
			연구위원	이 종 석	031-910-0139	010-8984-0139
			수석연구원	김 병 철	031-995-0880	010-6656-0843
	교량	1 20 23	수석연구원	나 원 기	031-910-0155	010-4345-1313
		노후인프라	수석연구원	민 지 영	031-910-0629	010-3006-1435
		센터 -	연구위원	유 영 준	031-910-0052	010-6301-0779
붕괴			수석연구원	서 동 우	031-995-0886	010-2054-4510
			수석연구원	진 승 섭	031-910-0393	010-5003-5749
	ઝો મો.	인프라안전	연구위원	김 영 석	031-910-0371	010-5552-7277
	지반	연구본부	연구위원	정 재 형	031-910-0378	010-3373-9621
	사면	인프라안전	수석연구원	김 승 현	031-910-0524	010-3420-2946
		연구본부	수석연구원	권 오 일	031-910-0512	010-2586-5125
		복합재난 대응연구단	수석연구원	이 종 현	031-910-0227	010-9178-9537
			수석연구원	김 진 환	031-910-0471	010-3202-5625
			연구위원	백 용	031-910-0228	010-3800-6712
	터널	도로관리 통합센터	수석연구원	이 규 필	031-910-0522	010-8984-5456
		인프라안전 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이 성 원	031-910-0226	010-6401-6418
	도로	노후인프라	연구위원	남 정 희	031-910-0190	010-9878-5558
		센터	수석연구원	전 성 일	031-910-0542	010-3075-2143
화재 / 폭발		화재안전 연구소	연구위원	김 정 엽	031-910-0543	010-3275-1540
			연구위원	여 인 환	031-369-0508	010-5330-5544
			수석연구원	채 승 언	031-910-0751	010-2622-8020
			수석연구원	안 찬 솔	031-910-0515	010-9119-1217
		국민생활 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배 규 웅	031-910-0363	010-3763-6167

연구본부 수석연구원 신지욱 031-910-0747 01	0-9256-0364
	0-9463-0937
	0-2433-4038
연구위원 유 인 균 031-910-0167 01	0-9152-4562
수석연구원 김 종 관 031-910-0215 01	0-3393-2388
수석연구원 진 원 종 031-910-0662 01	0-6260-0814
연구위원 곽임종 031-910-0579 01	0-4567-3354
지 진 인프라안전 수석연구원 윤 혜 진 031-910-0131 016	0-7100-2106
연구본부 수석연구원 김 석 중 031-910-0277 016	0-3619-6716
연구위원 한 진 태 031-910-0259 01	0-9021-7159
연구위원 신 현 섭 031-910-0287 01	0-2497-2412
	0-5020-0663
	0-4210-5526
	0-3461-5481
, , , ,	0-8681-2493
	0-8782-6426
여구의의 저 제 혀 031-910-0378 01	0-3373-9621
인프다안선 여구위워 바 히 무 031-910-0323 010	0-9159-0794
9785	0-2586-5125
성 크 홀 수석연구원 김 동 민 031-910-0482 01	0-2535-7526
미래융합 연구위원 최 창 호 031-910-0785 01	0-7588-1344
연구본부 수석연구원 조 진 우 031-910-0780 01	0-4736-1354
복합재난 연구위원 김 주 형 031-910-0236 01	010-3461-5481
연구위원 김 주 형 031-910-0236 01t	
	0-7370-6556
	0-5018-0317
	0-4090-4687
コミルコ	0-9284-1970
미대당업 인기 개천 김 8 원 031-910-0247 01	0-5441-0881
연구본부 수석연구원 박 범 진 031-910-0198 01	0-4718-7478
복합재난 연구위원 김 현 석 031-910-0176 01	0-4027-0387
대응연구단 수석연구원 김 영 록 031-910-0181 01	0-4152-9295
	0-8737-3745
	0-6249-2117
여구보부 수석연구원 김 지 성 031-995-0826 016	0-6631-6447
용수 / 가뭄 수석연구원 이 찬 수 031-910-0657 010	0-7629-3312
, , <u>, , , , , , , , , , , , , , , , , </u>	0-7196-4054
복합재난 연구위원 이 동 섭 031-910-0396 01년 대응연구단	0-4603-0359
	0-8734-3227
	0-2049-8734
완경오염 여구보브 연구위원 김 일 오 031-910-0649 01	0-8728-6898
	0-5162-5700
수석연구원 윤 상 린 031-910-0316 016	0-3358-3068

연구원 단체보험 안내

◎ 계약 내용 관련 문의

- 현대해상화재보험 공기업보험부 한종철 차장 02)3701-8688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영관리본부 총무복지실 이옥순 031)910-0448

◎ 보장항목별 주요 내용

	구 분	보장내용	비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3억원	교통재해 포함 장해지급율에 따라 3~100% 적용 천재지변 및 위험한 동호회활동 중 상해사고 시에도 보상		
질병사망 <mark>질병후유장해</mark>		1억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지급율이 80%이상 / 전액 지급		
		2천만원	일반암 최초진단 시(1회한)		
질 병 진 단 자 금	암	600만원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최초진단 시(1회한) *일반암 진단보상비(2천만원)의 30%		
		200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최초진단 시(1회한) *암진단 보상비(2천만원)의 10%		
	급성심근경색	2천만원	급성심근경색 최초진단 시(1회)		
	뇌졸중	2천만원	뇌졸중 최초진단시(1회)		
입원의료비		최고 1 <mark>천만</mark> 원	질병(출산 포함)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비 발생시 입원 1회당 1천만원 한도		
3대 비급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350만원	연간 350만원 / 50회 한도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연간 250만원 / 50회 한도		
	비급여 MRI/MRA	3 <mark>00만원</mark>	연간 300만원 한도		
입원일당(상해,질병)		3만원	상해, 질병으로 입원시, 1일 3만원 *출산 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 포함)		3천만원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장금액 한도내 지급		
벌금		2천만원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을 보장 금액 한도내 지급		
방어비용 (교통사고변호사선임비용)		5백 <mark>만원</mark>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금액 한도내 지급		
1~5종 수술비		10~3 <mark>00</mark> 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술분류표에 의한 수를 받았을 경우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지급		

장기임차차량 보험 안내

◎ 계약 내용 관련 문의

- AJ렌터카(단가계약업체) 임수정 대리 031)915-5656
- AJ렌터카 자체보험 1544-1600(평일 09시~19시) 1661-7977(야간, 주말, 공휴일)

◎ 차량임차 단가계약 특수조건

- 보험적용 운전자 대상: 건설연 소속 연구원 한정

1. 공통사항

- 가. 차량 파손등 사고시는 차량손해면책제도로 처리하며, "계약자"는 면책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 나. 차량의 고장시 수리 전문가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는 차량의 문제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5시간 이내에 동종 및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 시켜야 한다.
- 라. 차량의 보험은 만21세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 및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한 차량을 대여하여야 한다.
- 마. 동절기(12월,1월~3월)에는 신차계약건에 한하여 우레탄 체인을 계약 기간동안 1회 지급한다.
- 바. **운전자 자격요건은 만21세이상 및 운전경력 1년 이상**의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2. 보험가입조건(한도)

- 가. 18개월이상 임차차량(신규차량)
 - ① 대인(무한), 대물(1억원), 자손(1억원/인),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 나. 1개월이상 임차차량(구차)
 - ① 대인(무한), 대물(1억원), 자손(1억원/인), 무보험차상해1인당 2억원
- 다. 1개월미만 임차차량(구차)
 - ① 대인(무한), 대물(2천만원), 자손(1천5백만원/인), 무보험차상해 미가입
- 3.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조건에 의함.